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8가합1093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영숙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변론 종결 2019. 3. 12.

판결 선고 2019. 4.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91/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4. 12. 10. 접수 제589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5,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중 17.625/282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2. 접수 제800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3.3/430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12. 접수 제36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400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2. 접수 제800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400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21. 접수 제90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원고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접수일'란 기재 각 접수일에 '등기원인'란 각 등기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는 '피고 B의 지분'란 기재 각 지분만큼,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앞으로는 '피고 회사의 지분'란 기재 각 지분만큼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	접수일	등기원인	피고 B의 지분	날짜	등기원인	피고 회사의 지분
별지 제1항				2015. 12. 2.	2015. 9. 30. 매매	7/400
				2017. 4. 21.	2016. 6. 28. 매매	14/400
별지 제2항	2015. 12. 2.	2015. 8. 31. 매매	1/16	2015. 12. 2.	2015. 9. 30. 매매	7/400
				2017. 4. 21.	2016. 6. 28. 매매	14/400
별지 제3항	2015. 12. 2.	2015. 8. 31. 매매	1/20	2015. 12. 2.	2015. 9. 30. 매매	7/400
				2017. 4. 21.	2016. 6. 28. 매매	14/400
별지 제4항	2015. 12. 2.	2015. 8. 31. 매매	17.625/282	2015. 12. 2.	2015. 9. 30. 매매	7/400
				2017. 4. 21.	2016. 6. 28. 매매	14/400
별지 제5항	2015. 12. 2.	2015. 8. 31. 매매	1/16	2015. 12. 2.	2015. 9. 30. 매매	7/400
				2017. 4. 21.	2016. 6. 28. 매매	14/400
별지 제6항	2015. 12. 2.	2015. 8. 31. 매매	1/20	2015. 6. 12.	2015. 5. 13. 매매	3.3/430
				2015. 12. 2.	2015. 9. 30. 매매	7/400
				2017. 4. 21.	2016. 6. 28. 매매	14/400
별지 제7항	2015. 12. 2.	2015. 8. 31. 매매	1/16	2015. 12. 2.	2015. 9. 30. 매매	7/400
				2017. 4. 21.	2016. 6. 28. 매매	14/400
별지 제8항	2014. 12. 10.	2014. 11. 20. 증여	35.91/100			
별지 제9항	2014. 12. 10.	2014. 11. 20. 증여	35.91/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2009다1052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12. 10.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원고가 직접 등기국에 방문하여 우무인을 날인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관이 작성한 확인조서에는 원고에 대하여 '키 152cm의 둥근 얼굴로 이목구비가 또렷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4. 10. 11.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6. 12.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원고본인이 발급받은 2015. 5. 13.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12. 2.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원고본인이 발급받은 2015. 9. 10.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원고는 2015. 12. 23. 양천세무서에 지분변경신고할 당시 '토지 매매로 인해 원고의 지분이 29.93%에서 23.3%로 줄었으며, 피고 B 지분 4.16%, 피고 회사 지분이 1.47% 만큼 늘어났음을 확인하며 지분변경의 계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4. 2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원고가 직접 등기국에 방문하여 확인조서에 자필로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순, 판사 정진우, 판사 오소현